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25. 9. 17.

복지문화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어르신장애인과)
- 제출일자: 2025. 9. 3.(수)
- 회부일자: 2025. 9. 3.(수)
- 상정 및 의결: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(2025. 9. 17.)

### 2. 제안이유

- 달서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간 문화적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문화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생활 밀착형 문화거점을 마련하고자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을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,
- 「지역문화진흥법」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전문적, 효율적으로 운영할 역량이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위탁시설현황

시설명	소재지	규모(주요시설)	위탁금액	운영인력	비고(개소일)
달서생활문화센터 (월배점)	상화로21길 77 (진천동)	·지상 4층, 연면적 969m <sup>2</sup> ·프로그램실, 다목적홀, 동아리실 등	6,000만원 정도 (구비)	1명 (기간제)	2026. 1. (예정)

※ 월배노인종합복지관 지하1층~지상3층,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 4층

※ 생활문화센터 운영 현황: 3개소

- 장기점(달서아트센터 본관 1층), 송현점(디지털 별빛관 포함, 달서별빛캠프 진입로)
- 월성점(월성1동 복합청사 3층)

#### 나. 위탁개요

##### ○ 위탁사무

- 생활문화센터 시설관리 및 대관 등 행정업무 전반
-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-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·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
-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·동아리 활동의 육성·지원
- 영화, 음악, 무용, 미술 등의 상영, 공연, 전시 등 행사
- 문화·예술 활동을 통한 세대간 교류, 주민 참여 확대 프로그램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위탁기간 : 4년 8개월(2026. 1. 1. ~2030. 8. 10.)

○ 수탁자 선정방식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사·선정

### 4. 관련근거

○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2조, 제3조 및 제 11조

○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~제10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이 민간위탁동의안은 지역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문화 생활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문화거점으로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가 월배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복합공간으로 건립됨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,
- 달서생활문화센터(월배점)은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른 생활문화시설로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- 위탁업체 선정방법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공개경쟁모집으로 하고, 수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한 규정에 적합하며,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11조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는 등 위탁절차에 부합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“생활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사업” 운영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예산 대비 효과성을 높이고 다양한 자원이 축적된 전문 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.
- 다만, 위탁기관 선정 시에 위탁사무 수행 관련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며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,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·감독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

## 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“특이사항 없음”

## 7. 심사결과: 원안가결